

전북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12호

2024년도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

2024년도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전북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 분야	임용 직급	임용 인원	계약 기간	담당 업무	근무예정 부서
건설공사 품질시험	지방시설 7급 (일반임기제)	1명	2년	○ 품질시험(현장, 실내)·검사 및 성적서 작성 ○ 품질시험기기 교정 및 유지관리 ○ 품질시험 수수료 산정 ○ 건설공사 품질관리 현장 확인 컨설팅	도로관리 사업소

※ 임용(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임용근거

-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제2항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7호)
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3507호)
마.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임용자격 기준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행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정,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외”이라 한다)

○ 주소지·성별·연령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일)

▶ 다음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임용분야(직급)	임용자격 기준
건설공사 품질시험 [지방시설7급, 일반임기제] 1명 - 도로관리사업소 -	❶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❷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❸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민간 또는 국·공립 시험기관 등에서 품질시험·검사 관련 근무경력

※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4 보수수준

가. 연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직급별 연봉 한계액의 범위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7급(임기제)	66,396천원	47,157천원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나. 기타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5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대 상 자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내용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3분 내외) / 직무관련 면접(15~20분 정도)

- 면접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6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4. 3. 19.(화) ~ 3. 21.(목), 18:00까지 /3일간 *점심시간 제외
- 접수장소 : 전북특별자치도청 총무과 공무원채용팀(2층)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 우편접수** 등기 우편접수 대상자는 사전에 공무원채용팀으로 연락바람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제출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내에만 접수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

- ▶ 주소 : (우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총무과 공무원채용팀(2층)
-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063-280-2246)
- ▶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방문 '통상환증서'를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현금×)

나. 1차시험(서류전형) : '24. 3. 27.(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시험 공고문(일정 안내 등) : 3. 28.(목) / 도 홈페이지

다. 2차시험(면접시험) : '24. 4. 3.(수)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24. 4. 9.(화) / 도 홈페이지(시험채용) 공고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서식 1호)

나.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2호)

- 응시수수료 :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 7천원(6·7급)

※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NH농협은행 구입(09:00~17:00)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다. 이력서 1부(별지서식 3호)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라. 자기소개서(별지서식 4호)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도서식 없음)

- 직무수행계획서는 지원하고자 하는 임용분야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작성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사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바.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특히 담당업무가 지원하는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업무분장 내부 결재 및 분장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함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

사.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각 1부(①, ② 모두 제출)

- | |
|--|
| ①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종
② 소득금액 증명서(국세청 발급) 1부. ※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해당연도 모두 제출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가능 |
|--|

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자. 주민등록초본 1부(남여 모두 제출 : 병적사항 포함-남자에 한함)

차.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카. 관련분야 연구실적 및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6호)

- ☞ 유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필) 첨부

8 기타사항

-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나. 보완서류 제출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응시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하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라. 전북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및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마. 모든 증명서는 원본(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제출 가능하며, 공고일 이전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 기재) 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
- 바.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사. 본 임용시험은 응시인원 부족 등의 이유로 재공고하는 시험으로,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서류 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추후 재공고하지 않습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재출 서류로 같음
- 아.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전북소식 (시험채용-임기제/개방형직위 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자.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차순위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합격 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총무과 공무원채용팀(☎ 063-280-4219)
- 업무관련 문의

임용분야	직 급	담당부서	연 락 처	비 고
건설공사 품질시험	지방시설7급	도로관리사업소	☎063-290-6715	

참고

직무기술서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건설공사(토목분야) 품질시험	지방시설7급(일반임기제)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	○ 품질시험(현장, 실내)·검사 및 성적서 작성 ○ 품질시험기기 교정 및 유지관리 ○ 품질시험 수수료 산정 ○ 건설공사 품질관리 현장 확인 컨설팅
------	--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기획력, 추진력, 관계구축력 ○ (직렬별 역량) 토목 및 건설 재료분야 이해 및 분석능력
------	--

필요지식	○ 품질시험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현장 및 실내시험·검사능력 ○ 시험결과 분석 및 성적서 작성 능력 ○ 품질시험기기에 대한 이해 및 실무 적용능력 ○ 토목분야 건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 건설공사(토목분야) 품질시험 다음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민간 또는 국·공립 시험기관 등에서 품질시험·검사 관련 근무경력
	우대요건 ○ 없음